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새마을세계화재단 특정감사 -

2019. 3.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3. 처분요구일람표

1. ◪◪◪◪◪ ＋＋사 연구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주의) ····· 3

1-1. ◪◪◪◪◪ ＋＋사 연구용역 준공검사 및 용역 준공대가 지연지급 등 부당처리 (징계) ····· 5

2. 비상임이사 국외출장시 항공료 운임 부당 지급 (주의 및 통보) ····· 8

3. 용역 준공대가 지연 지급 (주의) ····· 10

4. 현지 고용원 통역비 지급 부적정 (주의 및 통보) ····· 12

5. 시범마을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시정 및 통보) ····· 15

5-1. 시범마을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등 업무태만 (징계) ····· 18

6.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22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사 연구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소 관 청 새마을세계화재단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재무회계규정」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총괄부서장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역·공사·제조 또는 물건 매입의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2015. 12. 1. ✠✠✠✠✠ 산학협력단과 ◪◪◪◪◪ ++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당초 용역기간 : 2015. 12. 1.~ 2016. 6. 30., 변경 용역기간 : ~ 2017. 2. 28.(증 8개월). 계약금액 : 78,000천원〕하고, 최종보고서 400부를 납품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그런데도, 위 재단에서는 계약종료예정일 2017. 2. 28.이 지나도 계약상대자가 납품이 지연되자 계약상대자인 ✠✠✠✠✠ 산학협력단의 지연배상금이 과다 부과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해 6. 8. 허위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지연배상금 1,950천원만을 부과한 채 성과품 400부 보고서가 납품되지도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8. 용역준공대금 39,000천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그 결과 실제 위 성과품은 감사종료 이후인 2018. 12.말경 납품되었으며, 실제 지연배상금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109,200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당초 6개월의 연구용역기간을 8개월이나 연장하고도 22개월 뒤에 성과품을 납품받는 등 위 용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풀고자 감사일 이전 수립된 용역성과품의 배부계획 등 활용계획 여부에 대한 경상북도의 질의에 위 재단에서는 아무런 답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데도 준공검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련자에게는「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하였음을 알립니다.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 ++사 연구용역 준공검사 및 용역 준공대가 지연지급 등 부당처리
소 관 청	새마을세계화재단
관 계 부 서	※※부
징 계 대 상 자	팀장 ☒ ☒ ☒ 3 병합
징 계 종 류	경 징 계
내 용	

위 ☒☒☒는 2016. 11. 7. 부터 2018. 9. 15. 까지 위 재단 ※※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

1. ◪◪◪◪◪ ++사 연구용역 준공검사 관련

「재무회계규정」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총괄부서장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역·공사·제조 또는 물건 매입의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2015. 12. 1. ✠✠✠✠✠ 산학협력단과 ◪◪◪◪◪ ++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당초 용역기간 : 2015. 12. 1.~ 2016. 6. 30., 변경 용역기간 : ~2017. 2. 28.(증 8개월). 계약금액 : 78,000천원〕하고 최종보고서 400부를 납품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계약종료예정일 2017. 2. 28.이 지나도 성과품 400부가 납품되지 않는 등 납품지연이 되자 같은 해 6. 8. 허위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28. 용역준공대금 39,000천원을 지급 요청하였다.

그런 뒤 위 사람은 2018. 9.까지도 용역보고서 등 성과품 납품과 활용계획 수립을 태만히 한 채 계약상대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실제 위 성과품은 감사종료 이후인 2018. 12.말경 납품되고, 실제 지연배상금은 납품일 기준으로 109,200천원이나 되는 등 계약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2. 용역 준공대가 지급 지연

「재무회계규정」 제72조와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67조, 6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를 지급토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2017. 7. 25. ㈜◐◐◐ 컨소시엄과 ☼☼☼-☼☼☼☼ 2017 &&&& 설치·운영 이관 용역계약을 체결(용역기간 : 2017. 7. 25.～ 2017. 12. 31., 계약금액 : 496,450천원)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따라서, 2017년도 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2017년 12월말 또는 2018년 1월에 대금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2018. 1. 20.까지 대가지급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7. 12. 31.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완료계 및 대가지급서류를 제출받고, 2018. 1. 4.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검사 및 대가지급 업무를 태만히 한 채 당면사항처리가 급하다는 사유로 정당한 대가지급기한(2018. 1월경)까지 대가지급을 미루어오다 10개월이 지연된 같은 해 10. 17.에야 비로서 용역 준공금 167,135천원을 지출 요청하였다.

그 결과 계약상대자는 지연이자 9,167천원[1]은 지급받지도 못한 채 정당한 대가를 10개월이나 지연하여 수령하게 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인사규정」제42조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위 사람을 새마을세계화재단「인사규정」제4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 1일당 지연이자 32,053원 × 286일

경 상 북 도

주의요구 및 기관경고

제 목 **비상임이사 국외출장 시 항공료 운임 부당 지급**

소 관 청 새마을세계화재단

관 계 부 서 ㅁㅁ부, ㅁㅁ부, ㅁㅁ부

내 용

「실비보상규정」 제5조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경우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적용토록 되어 있고,「여비규정」 제16조 및 【별표2】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1등석 정액의 국외 항공운임 정액을, 기타직원의 경우 2등석 정액 국외 항공운임 정액을 적용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재단에서는 재단 비상임 이사의 해외출장 시 2등석 정액 국외 항공운임을 적용하지 않고 위 규정과 다르게 대표이사 기준 1등석 정액 항공운임을 적용하여〔표 1〕와 같이 항공운임 21,182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재단이사 국외출장 현황

구분	출장일자	출장일수	직 위	성 명	출장국가	지급 항공운임	정상 항공운임
	소계 : 11건					43,474,400	22,291,710
2016년	1. 12. ~ 1. 16.	5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68,000	1,210,800
	8. 24. ~ 9. 5.	13일				9,305,300	6,958,910[2]
	10. 24. ~ 11. 1.	8일				5,429,000	2,157,900
	11. 1. ~ 11. 5.	4일				1,395,300	947,300
	11. 6. ~ 11. 10.	〃				4,758,500	1,738,800
2017년	5. 8. ~ 5. 13.	5일				6,264,600	3,584,400
	11. 22. ~ 11. 27.	〃				2,112,500	933,400
	〃	〃				2,112,500	933,400
2018년	12. 10. ~ 12. 14.	4일				3,342,900	1,275,600
	〃	〃				3,342,900	1,275,600
	〃	〃				3,342,900	1,275,600

한편 위 재단에서는 비상임이사의 국외출장시 재단을 대표하여 축사, 기조연설, 토론 등을 위해 필요하고, 재단 실비보상 규정과 다르게 항공운임을 적용

2) 이코노미석 실제 구매액이 없어 비즈니스석의 70% 수준 추청치로 계산

한 것은 인정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연령 및 경력을 고려하여 1등석 적용이 합리적이며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비상임이사의 최근 3년간 국내출장 및 출장비 실적은 이사회 참석 이외에는 없는 점, 아래〔표 2〕와 같이 항공운임을 지급하면서 그 역할이 단순히 재단을 대표하여 축사, 기조연설, 포럼 참석 등인 점을 고려할 때 비상임이사의 해외출장 당위성과 향후 관련 규정 개정 후 1등석 적용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표 2〕 재단이사 국외출장 및 역할, 필요성

구분	출장일자	출장일수	성명 / 출장국가	지급 항공운임	역 할	출장필요성
2016	1. 12. ~ 1. 16.	5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68,000	재단대표(축사)	동남아시아 전문가
	8. 24. ~ 9. 5.	13일		9,305,300	새마을교육	사업지확장에 따른 남미 사전답사
	10. 24. ~ 11. 1.	8일		5,429,000	기조연설	포럼 기조연설
	11. 1. ~ 11. 5.	4일		1,395,300	재단대표(축사)	동남아시아 전문가
	11. 6. ~ 11. 10.	〃		4,758,500	재단대표(축사)	아프리카 전문가
2017	5. 8. ~ 5. 13.	5일		6,264,600	재단대표, 마을점검	새마을 전문가
	11. 22. ~ 11. 27.	〃		2,112,500	기조연설	포럼 기조연설, 토론
	〃	〃		2,112,500	토론자	동남아시아 전문가
2018	12. 10. ~ 12. 14.	4일		3,342,900	토론자	포럼 조합토론 새마을 전문가
	〃	〃		3,342,900	좌장	
	〃	〃		3,342,900	토론자	

* 경상북도 질문서에 대한 재단 답변서 내용 재구성

조치할 사항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①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하여「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는「실비보상규정」과 다르게 비상임이사의 항공운임이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준공대가 지급 지연**

소 관 청 새마을세계화재단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재무회계규정」 제72조와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67조, 6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2017. 7. 25. ㈜☾☾☾ 컨소시엄과 ☼☼☼-☼☼☼☼엑스포 2017 &&&& 설치·운영 이관 용역계약을 체결(용역기간 : 2017. 7. 25.~ 2017. 12. 31., 계약금액 : 496,450천원)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따라서, 2017년도 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2017년 12월말 또는 2018년 1월에 대금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2018. 1. 20.까지 대가지급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재단에서는 2017. 12. 31.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완료계 및 대가지급서류를 제출받고 2018. 1. 4.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검사 및 대가지급업무를 태만히 한 채 당면사항처리가 급하다는 사유로 정당한 대가지급기한(2018. 1월경)까지 대가지급을 미루어오다 10개월이 지연된 같은 해 10. 17.에야 비로서 용역 준공금 167,135천원을 지출하였다.

비록 계약상대자와 대가지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구두상 협의 등 추가경정예산 수립 후 대가지급을 약속하였지만 추경예산 수립마저 지연되자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 시까지 수차례 대가지급 독촉 민원과 함께 같은 해 10. 12. 미지급 시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증명까지 접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계약상대자는 지연이자 9,167천원[3]은 지급받지도 못한 채 정당한 대가를 10개월이나 지연하여 수령하게 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나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1일당 지연이자 32,053원 × 286일

경 상 북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현지고용원 통역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새마을세계화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지침」 제33조에 따르면 해외사무소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그 해외사무소의 예산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현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지고용원의 복무규율, 휴가, 보수, 퇴직금 및 계약의 해지 등의 제반 고용조건을 고용계약서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당해 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 담당사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는 심의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재단 ◎◎◎ 사무소와 ＸＸＸＸＸ가 2018. 11. 9. 계약 체결한 현지인력 채용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계약직원의 업무는 통역, 코디네이터, 시범마을 현지 직원 관리 및 행정보조이며, 기타 재단이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 사무소와 우우우가 2017. 1. 2. 계약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채용직위는 통역과 보조이며, 고용인의 보수 4항[4]에 따르면 “재단은 보수와 퇴직금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사무소 현지직원은 위 고용계약서에 따라 보수와 퇴직금 이외에는 사례금 등 어떠한 비용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재단에서는 2017년 ◎◎◎ 사바라가무와주 주지사 새마을 연수

4) 원문 : The emploer will not pay any additional expense

등 4건의 새마을 연수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위 고용계약과는 다르게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 ＸＸＸＸＸ, 우우우에게 별도의 통역비 5,75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1〕 해외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통역비 지급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통 역 사	일 수	단 가	총 액
4회					5,750,00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0,000	1,000,000
				250,000	750,000
				125,000	1,000,000
				250,000	3,000,000

이에 위 재단에서는 ◎◎◎어, ▦▦▦▦어 등 특수 언어의 경우 국내에서 연수생과 일정기간 숙박을 같이 하는 사업특성상 내·외국인 전문 통역사를 5)일당 200,000원으로는 채용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외사무소 현지직원에 항공료와 일정 통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며, 향후 현지고용원 급여 상한액(월 $ 700) 내에서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소속 직원에게 고용계약서와 다르게 통역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주의)**

②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지침」 제33조 등에 따라 현지고용원의 국내 통역 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5) 특수어의 7시간당 순차통역료는 600,000원 정도

경 상 북 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시범마을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소 관 청	새마을세계화재단
관 계 부 서	ㅁㅁ부, ㅁㅁ부
내 용	

「재무회계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의 반납 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단 ㅁㅁ부-680(2017. 8. 23.) 신규 시범마을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항공권 현지구매 내부결재문서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절차는 현지 여행사 및 항공사를 통한 견적서를 제출받고 해당 금액 및 수수료를 해외사무소 및 협력관에 송금 지급한 뒤 현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여 연수생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잔액과 구매영수증은 재단 본부로 반납토록 되어 있다.

「재무회계규정」 제2조, 제56조와 「지방회계법」 제43조에 따르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출납원[6]을 임명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경비 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새마을세계화사업 등 국외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외 소재 사업자와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사무소 직원의 현금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출원이 해당 직원을 임시출납원으로 임명하고 경비를 교부한 뒤 경비 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시범마을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6) 채권자 및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게 한 뒤 지출원(위 재단의 경우 ㅁㅁ부장)에게 정산하는 제도

그런데도, 위 재단 ▣▣부에서는 2017. 9. 18.부터 9. 29.까지 시범마을지도자 47명을 국내로 초청·연수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항공권 현지 구매가 예산절감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내부결재문서 절차에 따라 2017. 8. ▦▦▦▦ 해외사무소 등 4개 해외사무소에 임시출납원 지정 등 회계관직 지정 요청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 103,607,570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뒤 연수 첫날인 2017. 9. 18. 자금 취급 권한도 없는 연수생 *** 등 3명으로부터 항공권 구매 집행 잔액과 영수증을 아래 〔표 1〕과 같이 수령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0. 24. 사업결과 보고 시 항공권 구매 잔액과 영수증은 재단 본부로 반납토록한 당초의 업무처리계획과는 다르게 항공권 정산에 관한 사항은 누락한 채 사업결과보고까지 결재처리 하였다.

〔표 1〕 항공권 구매 집행잔액 수령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급 현황	집행액	잔 액	수령일시
합 계	**103,607,570**	**97,011,340**	**6,596,230**	
▦▦▦▦	9,344,290	9,308,680	35,610	2017. 9. 18.
▩▩▩▩▩	38,620,370	36,772,790	1,847,580	2017. 9. 18.
* * *	23,608,950	21,858,820	1,750,130	2017. 9. 18.
☆☆☆☆☆☆	32,033,960	29,071,050	2,962,910	2018. 12. 18.

한편, 약 1년여 뒤 2018. 10. 26. ☆☆☆☆☆☆ 해외사무소 사업정산 중 내용 불분명의 사업비 잔액 2,208유로를 발견하여 뒤늦게 그 출처가 위 사업 항공권 구매 잔액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 28. 문서고에서 ▦▦▦▦, ▩▩▩▩▩, ◓◓◓ 항공권 집행 잔액과 영수증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재단 ▣▣부에서는 위 사업 항공권 집행 잔액을 다시 확인하고 반납 처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부의 반납 불가라는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반납하지 않고 담당직원 책상서랍에 집행 잔액 6,596,230원을 현재까지도 보관 중이다.

그 결과 결산회계처리가 왜곡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2. 임시출납원 지정 등 회계관직 관련 규정 미비

위 1.의 내용과 같이 ⧈⧈부는 「재무회계규정」 제7조에 따른 지출총괄부서(지출원)으로 위 연수준비 기간 동안 항공권 구매 등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집행을 위해 ▣▣부 등 관련부서로부터 임시출납원을 임명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고 집행하게 한 뒤 일정 기한 내 정산보고를 받는 등 임시경비의 교부 및 정산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재단 ◙◙부에서는 임시출납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이 지출원의 소관 사무인지도 모른채 항공권 관련 사업비를 교부하고 정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9. 2. 15. 재단의 해외사업 수행 특성상 해외 소재 사무소에 경비 교부 시 지출원의 임시출납원 지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 여부에 대한 경상북도의 질의에 증거서류와 함께 합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① 「재무회계규정」 제32조에 따라 항공권 구매 잔액 6,596,230원을 즉시 반납 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재무회계규정」 제2조, 제56조와 「지방회계법」 제43조에 따라 해외사무소에 임시경비 교부 시 각 부서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경비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시범마을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등 업무태만**
소 관 청	새마을세계화재단
관 계 부 서	ㅁㅁ부
징계 대상자	① ▩ ▩ ▩ ② ■ ■ ■ ③ ◍ ◍ ◍ 4 병합
징 계 종 류	**경 징 계**
내 용	

위 사람들은 2017. 9. 18.부터 같은 해 9. 29.까지 2017 시범마을지도자 초청 연수 사업을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

「재무회계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 ㅁㅁ부-680(2017. 8. 23.) 신규 시범마을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항공권 현지구매 내부결재문서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절차는 현지 여행사 및 항공사를 통한 견적서를 제출받고 해당 금액 및 수수료를 해외사무소 및 협력관에 송금 지급한 뒤 현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여 연수생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잔액과 구매영수증은 재단 본부로 반납토록 되어 있다.

「재무회계규정」 제2조, 제56조와 「지방회계법」 제43조에 따르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출납원[7]을 임명하여야

7) 채권자 및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임시

하고, 지출원은 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경비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토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2017. 9. 18.부터 9. 29.까지 시범마을지도자 47명을 국내로 초청, 연수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항공권 현지 구매가 예산절감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내부결재문서 절차에 따라 2017. 8. ▦▦▦▦ 해외사무소 등 4개 해외사무소에 관련 예산 103,607,570원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새마을세계화사업 등 국외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외 소재 사업자와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사무소 직원의 현금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출원이 해당 직원을 임시출납원으로 임명하고 경비를 교부한 뒤 경비 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과 ◯◯◯의 경우

그런데도, 위 ◯◯◯는 연수 첫날인 2017. 9. 18. 자금 취급 권한도 없는 연수생 *** 등 3명으로부터 항공권 구매 집행 잔액과 영수증을 아래 〔표 1〕과 같이 수령하고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처리를 태만히 한 채 항공권 구매 잔액과 영수증은 재단 본부로 반납토록한 당초의 업무처리계획과는 다르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1〕 항공권 구매 집행잔액 수령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급 현황	집 행 액	잔 액	수령일시
합 계	**103,607,570**	**97,011,340**	**6,596,230**	
▦▦▦▦	9,344,290	9,308,680	35,610	2017. 9. 18.
▩▩▩▩▩	38,620,370	36,772,790	1,847,580	2017. 9. 18.
* * *	23,608,950	21,858,820	1,750,130	2017. 9. 18.
★★★★★★	32,033,960	29,071,050	2,962,910	2018. 12. 18.

그런 뒤, 약 1년여 뒤 2018. 10. 26. ★★★★★★ 해외사무소 사업정산 중 내용불분명의 사업비 잔액 2,208유로를 발견하여 뒤늦게 그 출처가 위 사업 항공권 구매 잔액인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해 10. 28. 문서고에서 ▦▦▦▦, ▩▩▩▩▩, ◓◓◓ 항공권 집행 잔액과 영수증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위 ▩▩▩은 2018. 11. 1. 甲甲부장과 사무처장에게 관련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게 한 뒤 지출원(위 재단의 경우 ◘◘부장)에게 정산하는 제도

보고만 했을 뿐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처리를 태만히 한 채 본인의 책상 서랍에 현재까지 현금 6,596,230원을 보관하고 있다.

이에 위 ◯◯◯는 2017. 9월경 ▩▩▩ 주임에게 영수증과 현금을 전달하면서 정산처리를 부탁하였다 하고, ▩▩▩은 아무것도 전달 받은 것이 없고 항공권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변명하고 있다.

그 결과, 예산집행 잔액이 재무회계규정과는 다르게 반납되지 않고 개인 책상서랍에 장기간 보관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2. ⓘⓘⓘ의 경우

가. 시범마을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사업 관련

위 사람은 2017. 8월 경 신규 시범마을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항공권 현지 구매 내부결재문서에 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7. 10. 24. 위 사업 결과보고를 결재하면서 사업관련 정산에 대하여는 구두로만 확인하는 등 사업총괄부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런 뒤 2018. 11. 1. ▩▩▩으로부터 사업비 미반납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적극적인 반납 조치를 하지 않아 위 1.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현지고용원 통역비 지급 부적정

위 사람은 2017. 4월경부터 2017년 ◎◎◎ 사바라가무와주 주지사 새마을 연수 등 4건의 새마을 연수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내 통역의 경우 통역비의 과다 청구 우려, 검증된 통역사 초빙의 어려움을 사유로 통역 목적으로 채용된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 ＸＸＸＸＸ, 우우우에게 별도의 통역비 5,750,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현지고용원의 계약조건과는 다르게 5,75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인사규정」제42조 규정에 해당

한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위 사람들을 새마을세계화재단「인사규정」제4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새마을세계화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 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3.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 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위 재단에서는 2015. 12.부터 2018. 11.까지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사용 내역 중 9회(7,796,500원)에 대하여 집행대상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이외에도 매월 급식비 지출시 특별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해 급식비를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사용시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